# 캘리포니아 주 셀러스 퍼밋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규정된 귀하의 권리와 책임*

STATE BOARD OF EQUALIZATION


**조세형평국 위원 명단**

**Johan Klehs**
**제 1 지역**
**Hayward**

**Dean Andal**
**제 2 지역**
**Stockton**

**Claude Parrish**
**제 3 지역**
**Torrance**

**John Chiang**
**제 4 지역**
**Los Angeles**

**Kathleen Connell**
**주 감사원장**

**조세 형평국장**
**James E. Speed**



***Your California Sellers Permit(Korean)***
***2002년 6월 • 간행물 73호 • LDA***
***June 2002 • Publication 73-K • LDA***

# 조세 형평국장의 메시지

주 조세 형평국에 등록된 백만에 가까운 사업체 대열에 귀하를 함께 모시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귀하는 이제 판매업자로서 정기적으로 조세 형평국에 납세 신고를 하게 될 것이며 그러한 과정에서 *판매세 및 사용세법(Sales and Use Tax Law)* 에 규정된 판매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궁금한 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질문일 경우에는, 조세 형평국의 무료 안내 전화를 이용하십시오. 그러나 특정한 계좌에 관한 질문은 귀하의 계좌를 담당하고 있는 조세 형평국 지방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지방 사무소의 전화 번호는 이 간행물의 10장에 수록돼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 간행물에는 귀하의 사업에 대한 세법 적용 안내 책자, 법규 및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여 주십시오. 사본은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의 전화 800-400-7115로 문의하거나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 www.boe.ca.gov를 방문하십시오. 주문할 수 있는 간행물 목록은 9장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사업이 성공하길 빌며 또한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조세 형평국의 서비스를 보다 더 개선하는 데 필요한 여러분의 제안을 환영합니다. 논평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서슴없이 연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부터의 연락을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ames E. Speed, Executive Director
캘리포니아 주 조세 형평국장

*주: 귀하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본 간행물은 영문판을 대체할 목적이 아닙니다. 간행물 73-V의 영문판과 본 번역의 내용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문 내용이 우선합니다.*

# 목차


| 장 | | 페이지 |
|---|---|---|
| 1 | 셀러스 퍼밋의 취득 | 1 |
| 2 | 판매와 구매에 대한 세금 적용 | 4 |
| 3 | 납세 신고 — 일반적인 것 | 8 |
| 4 | 납세 신고서의 작성 | 11 |
| 5 | 사업체의 매입, 매도, 또는 폐업 | 15 |
| 6 | 재판매 증명서의 사용 | 17 |
| 7 | 기록 보관 | 20 |
|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 |
| 8 | 법규 | 21 |
| 9 | 간행물 | 24 |
| 10 | 도움이 필요할 경우 | 26 |


*주: 이 안내 책자의 내용은 일반적인 것이며 표지에 적힌 발행일 현재의 것입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법(세입 및 조세 법규 제 6001조 및 그 이하의 규정)은 난이할 뿐만 아니라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행 법률의 규정과 이 안내 책자의 내용이 상충될 경우에는 모든 결정은 현행 법률에 따라서 하게 되며, 이 안내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 1. 셀러스 퍼밋의 취득

## 셀러스 퍼밋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 셀러스 퍼밋이 필요합니다.

-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며
- 소매로 판매한다고 가정할 때 통상적으로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는 소비재를 판매하거나 임대 하려는 경우

셀러스 퍼밋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합명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 등에도 적용이 됩니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반드시 셀러스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셀러스 퍼밋이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잡동사니 세일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시 셀러스 퍼밋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퍼밋은 보통 한 장소에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발급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800-400-7115 입니다.

## "사업에 종사"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캘리포니아 주 내에 사무실, 판매장, 창고 또는 기타 사업장소를(비록 일시적일지라도) 갖춘 경우
- 캘리포니아 주 내에 판매원, 대리인 혹은 외판원을 두고 활동할 경우
-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물품을 리즈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그밖에도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판매 활동들이 있습니다. 적용되는 규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귀하가 반드시 셀러스 퍼밋을 취득해야 하는지 알고 싶으면 조세 협력국 사무소로 문의 하십시오.

## "통상적으로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상품을 소매하면 판매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품목의 예를 들면, 가구, 선물용품, 뜨거운 식품, 장난감, 골동품, 의류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 밖에 일부 서비스와 인건비도 만약 그것으로 인하여 새로운 동산(물건)이 제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역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고객을 위하여 반지를 만든다면,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것이 되며, 따라서 반지 대금(인건비가 포함된)전액이 과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객이 제공한 재료로 반지를 만들었을지라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수리나 수선으로 인해 발생된 인건비(예를 들어서, 다이어몬드를 다시 세팅하는 따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물건을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있는 물건을 수리하거나 수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판매한 상품을 설치해주거나 작동시켜 주고 청구한 인건비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주:* 단 청구서에 인건비를 별도 항목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데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므로, 귀하의 경우 무엇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에 문의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800-400-7115 이며 영어로만 통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는 업종에 해당되는 세금 안내 책자나 관련 법규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설명이 담겨진 법규집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3페이지에 현재 출간된 간행물 및 법규집 목록이 수록돼 있습니다.

### 퍼밋은 어떻게 신청합니까?

신청서는 인근 저희 조세 형평국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락하여 받을 수 있으며(25 페이지 참조) 또한 우편이나 팩스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전화 800-400-7115).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조세 형평국 인터넷 사이트는 www.boe.ca.gov 입니다. *주:*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다음 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은 우편으로 부치거나 직접 가지고 오십시오.

### 만일 퍼밋을 신청하면,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까?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셜 시큐리티 번호(법인의 임원은 제외)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틀림 없다는 증명과 제 삼자가 귀하의 증명서 번호를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운전면허증의 사본
- 거래 은행의 이름과 주소
- 소유 재산(부동산 등)의 주소, 현 시가, 갚아야 할 융자액 남은 액수, 융자 회사 이름
- 상품 구입(조달)처의 이름
- 경리 담당 또는 회계사의 이름
- 신원 조회인의 이름과 주소
- 매달 사업 운영비 지출 예상액(임대료, 인건비, 장비 구입 할부금 등)
- 월 예상 매출액 및 과세 대상 매출 예상액

이 외에도 기타 사항을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업자가 있거나 법인의 임원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의 매니저, 구성원, 임원이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들도 위에 적혀져 있는 일부 기재 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계좌에 관한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조세 형평국에 제출된 정보의 대부분은 비밀로 보관되지만, 해당될 경우, 셀러스 퍼밋에 관한 내용과 폐업 날짜와 같은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는, 납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과 체납액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귀하의 계좌에 관한 정보가 다른 정부 기관에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셀러스 퍼밋이 필요합니까?

사업 장소가 여러 곳에(각각 다른 장소에) 있을 경우엔, 사업장마다 셀러스 퍼밋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곳의 사업장을 통합한 단일 퍼밋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셀러스 퍼밋을 신청할 때 모든 사업 장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면 조세 형평국은 그에 합당한 종류의 퍼밋을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 셀러스 퍼밋 신청 때 수수료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폐업으로 인한 미납세금의 발생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납세 담보금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금의 액수는 셀러스 퍼밋을 신청할 때 결정됩니다.

###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아도 셀러스 퍼밋을 소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셀러스 퍼밋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더 이상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셀러스 퍼밋을 반납하여 이를 취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5장에 있는"사업체의 매입, 매도 또는 중단(폐업)"(Buying, Selling, or Discontinuing a Business)에 관한 내용도 참조하십시오. 또한 조세 형평국은 귀하가 퍼밋을 반납하지 않아도 귀하가 더 이상 판매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퍼밋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사업체의 주소나 우편물 받는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조세 형평국에서 귀하에게 납세 신고서를 우송할 때 정확한 주소로 보낼 수 있도록 기록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체의 소유주가 변경되면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의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직접 이 사실을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5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유권 관계 기록을 경신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 이후에 사업체에 부과되는 세금, 이자 및 벌금을 전 소유주가 보통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체의 형태를 법인, 합명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소유권 변동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유권 형태의 변동 사실을 다른 기관이 아닌 조세 형평국에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 사실을 신문에 발표하거나 조세 형평국 이외의 다른 주정부 기관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조세 형평국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또한 동업 관계를 끊거나 동업자를 추가하는 경우, 조세 형평국에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제때 조세 형평국에 통보하면 동업자가 떠난 후 해당 사업에 발생하는 세금, 벌금 및 이자에 대한 동업자의 개인 부담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쎌러스 퍼밋을 별도로 소유한 부부가 이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한 경우에도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유권 변동과 같으므로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업체 운영에 간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조세 형평국에 서면 보고를 하지 않는 한, 법정 별거나 혹은 이혼 판결문에 의하여 사업체를 부부 중 어느 일방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조세 형평국에 보고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쎌러스 퍼밋은 사업면허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나 카운티 사업 면허국에 연락하여 별도의 사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 번호부의 정부 기관란(예를 들면, 시 정부 및 카운티 정부 기관란 밑에 *면허* 혹은 *사업 면허*라고 적힌 곳)을 찾아 보십시오.

### 기타 세금의 납세를 위하여 등록해야 합니까?

조세 형평국에서 취급하는 기타 세금 프로그램에 관한 것은 26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다른 주정부 기관이나 연방 및 지방 정부의 징세 및 면허 발급 부서에 연락하여 등록 여부에 관한 것(예를 들면, 가주 세무국이나 고용개발국에 등록해야 하는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은 주, 지방, 및 연방 퍼밋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내 센터 목록을 보려면 인터넷 사이트 www.calgold.ca.gov/pac.asp를 방문하십시오. 또한, 캘리포니아 주 세금 안내 센터 www.taxes.ca.gov를 참조하십시오.

### 사업 장부 기록이 세무 감사 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장부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사업자가 어떤 종류의 장부(기록)를 반드시 보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는 7장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감사를 할 경우, 추징할 세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환불 받을 것이 있다든가, 또는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했다든가를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감사는 3년 간격으로, 또는 퍼밋을 폐쇄할 때,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퍼밋의 감사와 연관되어 세무 감사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입수한 정보가 있을 경우, 세무 감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퍼밋 소지자로서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퍼밋 소지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의 신고 및 납부**(2, 3 및 4장 참조)
- **적합한 기록의 보관**(7장 참조)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 형평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체의 주소 또는 우편물 받는 주소의 변경**(2 페이지 참조)
- **사업체의 소유권 변동**(위의 내용 참조)
- **사업체의 매도**(5장 참조)
- **사업체의 매입**(5장 참조)
- **사업의 중단**(5장 참조)

# 2. 판매와 구입에 대한 세금

*소매업자로서 귀하는 판매세와 사용세를 납부하고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엇이 과세 대상이 됩니까?

이 장에서는 납세 신고 책임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다음 장에서는 판매세와 사용세의 납세 신고서 제출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1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물품을 소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가구, 선물용품, 장난감, 골동품, 의류 등이 이러한 과세 대상 물품에 포함됩니다. 또한, 새로운 물품을 제작 또는 생산하는 데 들어간 서비스(용역)와 인건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소매업자는 판매세 대신 사용세를 조세 형평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세가 적용되는 구매의 가장 흔한 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용할 물품을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타주의 소매업자로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물품을 판매할 때는 언제나 고객으로부터 사용세를 징수해야 합니다(사용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11 – 12 페이지 참조).

판매세와 사용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와 구매시 판매세와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그러한 경우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정한 식료품의 판매와 미국 연방 정부로의 납품, 그리고 처방약의 판매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면세 판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publication 61(간행물 61호), *판매세와 사용세: 면제와 예외(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를 주문하십시오(간행물 주문 방법은 10장 참조).

## 조세 형평국에 판매세를 납부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귀하는 판매업자로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정확한 금액을 조세 형평국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추징금에다 벌금과 이자까지도 물게 됩니다.

## 고객으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록 귀하가 조세 형평국에 판매세를 납부하고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물품 판매시 부과되는 판매세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물품을 판매할 때 판매세가 $1.75이라면, 고객이 판매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할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판매세를 고객에게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물품 가격에 판매세를 가산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영수증이나 청구서에 판매세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
-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에 판매세가 가산될 것이라는 안내문을 업소의 구내에 게시했거나 또는 유사한 내용을 가격표, 광고물 그리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쇄물에 밝힌 경우, 또는
- 매매 계약에 구체적으로 판매세를 가산할 것이라는 것을 명시한 경우

청구서나 영수증에 판매세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이를 판매 가격에 일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판매세가 판매 가격에 포함됐음을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고객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하거나 가격표 혹은 광고물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어느 것이든 마땅한 방법으로). 다음의 안내문 가운데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모든 과세 대상 품목의 가격에는 천분의 일까지 계산된 판매세가 포함됩니다." 또는
- "이 물품의 가격에는 천분의 일까지 계산된 판매세가 포함됩니다."

## 어떤 세율(稅率)을 사용해야 합니까?

현재 주 전역에 적용되는 판매세와 사용세의 기본 세율은 7.25%입니다만 실제로 적용되는 판매세와 사용세율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판매세와 사용세의 세율이 표준 기본 세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별도의 "특별 조세 구역"을 설치하도록 승인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특별 조세 구역은 카운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특별 조세 구역은 카운티 내의 한 도시에만 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조세 구역에서 징수된 세금은 여객 운송 또는 도서관 같은 특별 서비스에 사용되거나, 또는 일반 공공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 샌 버나디노(San Bernardino) 카운티에서는 세율이 7.75% 입니다. 이 세율은 주 전역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7.25%에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 운송국 특별조세 0.50%를 가산한 것입니다. 이 세율은 샌 버나디노 카운티 전역에 적용됩니다.
- 엘 도라도(El Dorado) 카운티 내에 있는 프라서빌(Placerville) 시에서는 세율이 7.50% 입니다. 이 세율은 주 전역에 적용되는 기본 세율은 7.25%에다 프라서빌 시 공공 안전 특별 조세 0.25%를 가산한 것입니다. 이 7.50% 세율은 프라서빌 시 경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프라서빌 시를 제외한 엘도라도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는 7.25%의 세율이 적용됩다.

캘리포니아 내의 모든 사업체의 3/4 이상이 특별 조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거나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에 설명한 특별 조세 구역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소매업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판매와 임대에 반드시 특별 조세 구역 판매세(거래세라고 칭함) 또는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구역 내에 사업체가 있거나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 해당 구역 내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임대(리즈)하는 경우 또는
- 해당 구역 내에 등록될 차량, 미등록 선박 혹은 항공기를 판매하거나 임대 하는 경우

소매업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특별 조세 구역 내에서 *사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 비록 임시로, 간접적으로 혹은 대리인을 통할지라도 특별 조세 구역 내에 어떠한 형태이건 사무실, 판매 전시장, 창고, 혹은 기타 영업장소를 유지, 점유, 혹은 사용할 경우 또는
- 판매, 배달, 혹은 주문을 받을 목적으로 특별 조세 구역 내에서 활동하는 대리인이 있을 경우 또는
- 특별 조세 구역 내에 소재하는 물품을 임대(리즈)해주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

특별 조세 구역의 세금 납부와 일반적인 판매세와 사용세 납부에 적용되는 규정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publication 44(간행물 44호), *특별 조세 구역의 세금에 관한 안내서(Tax Tips for District Taxes)*를 참조하십시오.

만일, 판매와 임대가 특별 조세 구역세에 해당되지 않으면, 주 전역에 적용되는 현행 판매세와 사용세의 기본 세율 7.25%에 따라서 신고하면 됩니다.

## 특별 조세 구역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에 관한 정보는 아래 소스를 포함하여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 적용되는 세율을 상세히 기록한 publication 71(간행물 71호), *캘리포니아 도시 및 카운티의 판매세와 사용세 세율(California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s)*을 읽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조세 형평국 인터넷 온라인 www.boe.ca.gov/sutax/pam71.htm를 통해 입수할 수 있으며, 또한 전화 800-400-7115로 문의하여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 근무 시간 중에 800-400-7115로 전화하여 담당 직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 고객으로부터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세나 사용세를 과다 징수했을 경우에는 초과분을 고객에게 반환하든가 아니면 조세 형평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물물 교환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세와 사용세법에서는 물물교환도 판매나 구매 행위와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물물 교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정한 시장 가격이 통상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 제품 소매상이 치과 치료비로 $500을 낼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치료비 대신 재고품인 텔레비전 수상기를 준다면, 이 수상기는 판매로 간주되기 때문에 납세 신고 때 총매상고에 이를 포함시키고 $500에 대한 판매세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트레이드-인도 과세대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트레이드-인(신품 대금의 일부로 내는 중고품)의 값어치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00짜리 차를 팔 때 $4,000 상당의 중고차를 차값의 일부로 받았더라도 판매세를 계산할 때는 실제 판매 가격 $20,000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즉, 중고차의 값을 새 차의 판매 가격에서 공제하고 계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배달료와 출하료(出荷料)도 과세 대상이 됩니까?

***배달료***

- *일반 운송회사, 미연방 우편, 또는 독립 하청업자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직접 배달 해주는 경우*

  청구서나 기타 영수증에 배달료라고 별도의 항목으로 분명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배달료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달료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 고객에게 냉장고를 팔고 운수업자를 시켜서 배달해 줍니다. 청구서에는 냉장고 값 $750에다 별도로 배달료 $50이(운수업자가 청구한 요금) 기재됐습니다. 배달료를 별도로 기재했으므로 냉장고 대금($750)에만 세금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청구서에 냉장고 대금과 배달료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그냥 $800 이라고 했으면, 전액에 대한 세금이 적용됩니다.

  *주:* 만일 실제 비용보다 더 많은 배달료를 청구하면, 그 초과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위에 든 예에서, 실제 비용은 $50인데(운수업자가 청구한 요금) 고객에게는 $60의 배달료를 청구했다면, 초과된 $10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 해주는 경우*

  청구서에 배달료를 별도로 기재했든 안했든 간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한 경우에는 세금이 적용됩니다(아래에 있는 주를 참조하십시오).

  *예*. 고객에게 냉장고를 팔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해 줍니다. 청구서에는 냉장고 값 $750에다 별도로 배달료 $50이 기재됐습니다. 그래도 배달료와 냉장고 대금에 모두 세금이 적용됩니다.

  *주:* 만일 배달하기 전에 상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해 주어도 배달료에는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취급 수수료*

취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 *통합 요금*

배달료와 출하료를 따로 기재하지 않고 총액만을 청구하면(예를 들어, 청구서에 "우송료 및 출하료"(postage and handling) 또는 "운송료 및 출하료"(shipping and handling)라고 한 다음 총액만을 기재한 경우), 출하료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반면, 배달료는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6 페이지에 있는 *"배달료"*참조).

*주:* 배달료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청구서에 배달(delivery), 운송(shipping) 혹은 우편 요금(postag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포에 우편 요금 혹은 운송료가 표시돼 있을지라도 단순히 출하료—수화물 취급 수수료(handling)라고만 별도로 기재된 것은 배달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전액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달료나 특정한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 800-400-7115로 전화하십시오. 또한 법규 1628호, *운송요금(Transportation Charges)*이나 publication 100(간행물 100호), *운송료 및 배달료(Shipping and Delivery Charges)*라는 책자를 구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타주의 소매업자를 위하여 생산자 직송을 하는 경우, 판매세를 제가 부담해야 됩니까?**

타주의 소매업자를 위하여 대신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고객에게 생산자 직송이나(drop shipment) 특별 배달을 하는 경우, 그 타주의 소매업자가 이미 캘리포니아 셀러스 퍼밋을 소지하고 있거나 퍼밋 또는 사용세—등록증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귀하는 그에 대한 세금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타주의 소매업자가 앞에 언급한 퍼밋이나 등록증을 반드시 소지해야만 한다면, 그는 이미 캘리포니아 주의 소매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세금에 대한 책임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캘리포니아 고객에 대한 최종 판매 가격에 기초하여 귀하 자신이 소매업자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세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그 타주의 소매업자가 캘리포니아 셀러스 퍼밋 또는 사용세—등록증을 소지할 의무가 없을 경우, 그리고
- 그 상품의 판매가 캘리포니아 판매세 혹은 사용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만약, 캘리포니아 고객이 재판매할 목적으로 타주의 소매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그가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귀하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6장 참조).

2001년 1월 1일 이후에는 생산자가 규정 제 1706조, *생산자 직송*에 명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자 직송 상품의 판매 가격을 계산해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 목적상으로 생산자가 직접 고객인 타주 소매업자에게 부과한 물품 판매 가격에 10 퍼센트의 이윤을 더한 금액을 생산자 직송 물품의 소매 판매 가격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품 대금으로 외화를 받을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은 매매 계약 당일의 환율(외환 시세)을 기준으로 하여 미국 달러로 계산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조세 형평국의 인터넷 사이트, 강좌, 간행물 등등 여러 가지의 자원을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21 페이지, 법규
- 23 페이지, 간행물
- 24 페이지, 도움이 필요할 경우

# 3. 세금 보고 - 일반적인 것

##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란 무엇입니까?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란 셀러스 퍼밋 소지자들이 판매세 및 사용세를 조세 형평국에 납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퍼밋 소지자들은 *주와 시 및 특별 조세 구역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State, Local & District Sales & Use Tax Return)*라는 표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공제를 신고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업체들은 *약식—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Short Form—Sales and Use Tax Return)*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납세 신고서는 언제 제출합니까?

셀러스 퍼밋을 발급 받을 때 월별, 분기별, 혹은 연 1회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받을 것입니다(사업의 예상 판매고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조세 형평국에서는 각 신고 기간에 맞추어서 납세 신고서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신고서 상단에 신고 마감일이 인쇄돼 있습니다. 만일 신고기간 이후 15일이 경과되어도 신고서를 받지 못하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에 전화로 문의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번호는 800-400-7115입니다.

반드시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신고 불이행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납세 신고는 다음에 설명한 바와 같이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우송할 경우*. 신고서와 세금을 우편으로 보낼 경우,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 날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어야 됩니다. 우체국 소인이 제날짜에 찍힐 수 있도록 우편물 수거 시간이 지나기 전에 납세 신고서를 우체통에 넣도록 하십시오. 만일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짜의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우편 외에 상업적인 배달업자를 통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서를 발송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관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경우*. 신고서와 세금을 직접 제출할 경우에도 신고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제출해도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납세를 전자 자금 이체 방식으로 할 경우*. 전자 자금 이체(EFT-Electronic Funds Transfer)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등록이 된 경우(9 페이지에 있는 등록 조건을 참조)에도, 납세 신고서는 기간 내에 우송을 하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조세 형평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 자금 이체 방식의 납세 마감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publication 80 *(간행물 80호), 전자 자금 이체 프로그램: 정보 안내서(Electronic Funds Transfer: Information Guide)*를 참조하십시오.

*인터넷을 통해서 납세 신고를 할 경우*. 9 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일부 납세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 기간의 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납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혹은 세금 미납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마감일이 지난 후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면, 이자 및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또한 납세액 전액을 기한 내에 납부했을지라도 납세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과태료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800-400-7115로 전화하셔서 publication 75(간행물 75호), *이자와 과태료(Interest and Penalty Charges)*에 관한 안내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십시오.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 형평국은 납세 신고서 제출 기한을 (최고 1개월) 연장해 줍니다. 기한 연장을 받은 후 그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이자는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기한 내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면, 800-400-7115로 전화하여 기한 *연장 요청서(Request for an Extension of Time)*라는 BOE-468 양식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는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에서 이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과세 기간 내에 납부해야 될 세금이 없을지라도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세 기간 내에 판매 실적이 없거나 혹은 판매실적이 있어도 모두 면세 판매였을 경우에도 반드시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다음의 몇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금, 수표 또는 머니 오더(우편환)***를 8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조세 형평국 사무소에 납부하거나 우송하십시오. 현금은 우편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수표나 머니 오더의 수취인은 조세 형평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으로 적으십시오.
- ***크레딧 카드로 납부.*** 이 옵션은 서면 신고서를 제출하고 전자 자금 이체(아래에 설명) 방법으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체에만 제공됩니다. 다음의 크레딧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NOVUS(예를 들면, NOVUS/Discover 카드), MasterCard 및 American Express. 크레딧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서는 세금 신고서와 함께 조세 형평국에서 보내 드립니다.
-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및 납부.*** 이 옵션은 특정 사업체에만 제공됩니다. 이 옵션은 전자 자금 이체(아래에 설명)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는 사업체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면 조세 형평국 인터넷 사이트 www.boe.ca.gov를 방문하여 "(전자 서비스) Electronic Services"를 클릭하십시오. 현재, 세금은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되고 있습니다.
- ***전자 자금 이체***(EFT)***로 납부***. 현재, 판매세 및 사용세로 월 평균 $20,000을 납부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EFT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들도 원하는 경우 EFT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800-400-7115로 전화하여 publication 80(간행물 80호), *전자 자금 이체 프로그램: 정보 안내서(Electronic Funds Transfer Program: Information Guide)*를 보내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또한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 주소 www.boe.ca.gov/elecrsrv/eftsrvcont.htm에서 전자 자금 이체(EFT)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또한 납세 신고서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세금 계산 때 반올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납세 신고서에 기입하는 금액은 정수의 달러로 반올림할 수 있습니다. 즉, 50센트 미만의 금액은 바로 그 아래 수치의 달러로 반올림하고 50센트 이상의 금액은 바로 그 위 수치의 달러로 반올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127.49은 $127로 반올림되고 $127.50은 $128로 반올림됩니다.

###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세 형평국은 소정의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귀하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그래도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귀하의 셀러스 퍼밋은 취소되며,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하면 세입 및 조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7153 조항에 따라 최하 $1,000에서 최고 $5,000까지의 벌금형 혹은 최고 1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되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선납(先納) 계좌란 무엇입니까?

과세 대상 판매고가 월 평균 $17,000 이상 되는 업체는 조세 형평국에 세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만일 세금을 선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 형평국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드릴 것입니다. 조세 형평국의 서면 허가 없이는 세금 선납을 하지 마십시오.

**연료의 소매나 도매를 할 경우, 판매세 납부 특별 규정 대상이 됩니까?**

만일 귀하가 특정한 연료의 도매업자 또는 공급업자인 경우에는 연료 유통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 판매세의 일부를 선납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 징수한 세금은 특별 양식인 "SG"신고서를 사용하여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연료 소매상 혹은 기타 업자로서 판매세를 이미 공급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판매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선납한 세금에 대한 크레딧을 청구함으로써 선납 세금에 대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 800-400-7115로 전화해서 Publication 82(간행물 82호), *연료 판매의 선납 판매세(Prepaid Sales Tax on Sales of Fuel)* 안내서를 보내주도록 요청하십시오.

**고객이 물건 값을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혹은 할부로 지불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합니까?**

대금을 판매 당시에 받건 혹은 그 이후에 받건 간에 세금은 판매가 이루어진 과세 기간에 – *고객이 물품을 점유하거나 소유권을 점유한 시점* –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대금을 언제 받는가에 상관없이 과세 기간 내에 이루어진 외상 판매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리즈 페이먼트(임대료)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리즈가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과세 기간 내에 받은 페이먼트만을 신고합니다. 앞으로 받아야 할 잔액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트럭, 항공기 및 기타 이동 수송 장비의 리즈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리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800-400-7115 번호로 문의하여 법규 제1660호, *유형 물품의 리즈-일반 (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또는 법규 제1661호, *이동 수송 장비의 리즈(Leases of Mobile Transportation Equipment)* 사본을 요청하십시오. 또는 publication 46(간행물 46호),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유형 물품의 리즈에 관한 세금 안내 (Tax Tips for Leasing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California)*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외상 판매를 신고한 다음에 대금(외상값)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제출시 "대손"(貸損)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13 페이지에 있는 *과세 대상 판매의 대손 손실을* 참조하십시오.

**저는 연 1회 납세 신고를 합니다. 폐업을 하거나 사업체를 매도할 경우, 언제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폐업을 할 때 최종 납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1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폐업을 하면, 4월30일까지 최종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폐업을 하면 7월31일까지, 7월1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폐업을 하면, 10월31일까지 그리고 10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폐업을 하면, 다음 해 1월31일까지 최종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을 할 때 사용할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 양식은 가까운 조세 형평국 사무소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자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납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도움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가까운 조세 형평국 사무소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을 하거나 또는 안내 센터로 전화를 하십시오. 조세 형평국 직원들이 납세 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비록 납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드리거나 납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귀하의 기록을 대신 검토할 수는 없으나 신고서에 무슨 내용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4장에 있습니다.

**회계사에게 납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 회계사에게 납세 신고서를 우송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양식을 직접 회계사에게 우송해 주도록 조세 형평국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서 양식 외의 다른 통신문들은 계좌에 기록된 납세자의 주소로 계속 우송될 것입니다.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주는 회계사들은 최소한 5개의 조세 형평국 계좌를 취급할 경우에만 납세자들의 세금 신고서 양식을 직접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요청하려면 허가서 양식(BOE-91)을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서 양식이 필요하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 800-400-7115로 전화하십시오.

# 4. 납세 신고서의 작성

아래에 있는 것은 주 정부, 시 정부, 그리고 특별 조세 구역의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State, Local & District Sales & Use Tax Return), (BOE-401 양식)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판매세 및 사용세의 "약식 신고서"(BOE-401-EZ 양식)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에 관한 내용은 신고서 용지에 첨부된 지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800-400-7115로 문의하십시오.*

## 납세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본 단계란 무엇입니까?

납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필요한 4가지 기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로 다음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1) 과세 기간 내의 총매상고(리즈와 렌탈 임대료 포함), 그리고
  (2) 사용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매액 총액(아래 설명 참조)
- 그 다음에, 모든 면제 또는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 세 번째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총매상고와 사용세 대상 구매액에서 공제액과 면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뺍니다.
-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나온 액수를 사용하여 조세 형평국에 납부할 주, 카운티, 시 및 특별 조세 구역의 세액을 결정합니다.

## 어떤 종류의 판매가 총매출고에 포함됩니까?

물품을 판매한 경우 대금을 받았거나 안받았거나 이에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물품의 판매 대금은 금전(현금 및 신용 거래 계정 판매)으로 결재하지만, 어떤 때는 금전 이외의 다른 형태(물물교환이나 용역의 제공)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 대신 받은 교환품의 공정한 시장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에 있는 것들의 매상액은 총매상고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California 로터리 (복권)판매(스크래처스, 로토 티켓 등등)
- 우편환(머니 오더) 수수료
- 선물 교환권 판매

앞 장에서 이미 설명한대로, 판매 대금을 나중에 받는 경우에도(해당 과세 기간 이후) 과세 기간 내에 판매한 모든 것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6월에 $500짜리 물건을 외상으로 고객에게 넘겨주고, 나중에 외상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고객이 6월에(판매 시점) 물건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 달의 매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선물 교환권:* 선물 교환권의 판매는 그 당시의 총매상고에는 포함시키지 않지만, 나중에 선물 교환권을 받고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물건을 팔면, 이를 상환한 시점의 과세 기간 내의 매상으로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어떤 경우에 구매에 대해 사용세가 적용됩니까?

물품의 구입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구입한 상품을 사용한 경우.* 6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판매할 의도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면, 공급업자는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하기 전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면, 그에 대한 사용세를 부담해야 됩니다.(그러나 재판매하기 전에 진열 혹은 시범의 목적으로 사용된 물품은 일반적으로 사용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타주의 소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사용한 경우.* 일반적으로, 타주의 소매상으로부터 장비나 상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세의 과세 대상이 되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 사용세는 리즈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리즈에 관한 정보를 원하면, 800-400-7115로 전화하여 publication 46(간행물 46호),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유형 물품의 리즈에 관한 세금 안내(Tax Tips for Leasing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California)* 책자를 주문하십시오.

## 납부해야 할 사용세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사용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 구매 가격을 납세 신고서의 2번째 줄 "사용세 과세 대상 구매"(Purchases Subject to Use Tax)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 주를 참조하십시오.

*주—타주의 소매상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할 때*

타주의 소매상들 중 일부는 캘리포니아 주 사용세—등록증(Certificate of Registration—Use Tax)을 소지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고객들에게 과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판매하면,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하고 이를 신고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소매상에게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지불했으면, 세금 신고서에 이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용세를 징수한 타주의 소매상은 여러 가지 사항 중 특히 징수한 사용세액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사용세를 지불했다는 것이 표시된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만일 상품 구입시 타주에서 부과하는 판매세 또는 사용세를 적절히 지불한 경우에는 납세 신고서에 타주에서 부과한 판매세 또는 사용세(sales or use taxes imposed by other states)라고 적힌 곳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캘리포니아 주에서 부과하는 세액만큼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주에서 부과한 판매세 혹은 사용세의 크레딧은 *실제로 판매세 혹은 사용세를 지불한 구매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소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크레딧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과세 대상이 아닌 판매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설명한대로 (1) 총매상고와 (2) 사용세 과세 대상이 되는 구매액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한 것 중에서 어느 것은 면세되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총매상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 페이지에서 설명한 대로, 특정한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만일 귀하가 신고하는 총매상고 중에 과세 대상이 아닌 특정한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초과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하는 대로 여러 가지 종류의 공제 대상 항목이 있습니다.

## 일반 면제/공제

아래에 있는 면제와 공제에 대한 설명은 BOE-401-A, *주, 시 및 특별 조세 구역의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서(State, Local & District Sales & Use Tax Return)* 양식에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공제할 수 있는 면제 대상의 종류에 대한 대강의 요점만이 설명돼 있습니다. 각각 경우별 요건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여기에 모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로 연락하십시오.

주: 납세 신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거래 면제액은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연방 정부에 납품하고 납세 신고 때 그 판매액을 총매상고에 포함시켜 신고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납세 신고시에 공제하는 모든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7장의 "기록 보관"(Keeping Records) 참조).

### 재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

다른 소매업자에게 재판매 증명서(Retail Certificate)를 받고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그 거래액을 총매상고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다른 소매업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그가 구입하는 물품이 재판매용임을 밝히고 유효한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그러한 증명서를 받고 다른 소매로 부터 물품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판매 증명서의 사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6장에 있습니다.)

**비과세 식료품의 판매**

비과세 식료품의 판매고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사를 포함하여 일부 식료품은 과세 대상이 되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 과세 대상 여부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 식품에 관한 안내 책자 및 법규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관련 법규는 22 페이지에서 "식품 및 식사"를 참조하십시오.) 관련 간행물을 보려면 23 페이지에서 간행물 22호, 24호, 31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 www.boe.ca.gov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인건비**

물품의 수리, 수선 혹은 설치를 위한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고 자동차에 라디에이터(자동차의 엔진 냉각기)를 설치하는 인건비는 과세 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새 물품을 제조하는 데 소요된 인건비(반지나 가구 같은 물품의 제작비)는 과세 대상이 되며 따라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publication 108(간행물 108호) *어떤 경우에 인건비에 세금이 부과될까요?(When Is Labor Taxable?)*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전화 800-400-7115로 문의하십시오.

**미국 연방 정부 및 기타 공공 기관에의 판매**

미국 연방 정부나 일부 산하 기관 및 대행 기관으로의 판매에는 세금이 면제되므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적십자사 및 해당 자격이 있는 연방 신용 조합 등의 기타 면세 판매의 예들은 납세 신고서에 동봉하는 설명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나 시와 카운티 정부 그리고 기타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다른 일반 판매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 대한 판매액을 총매상고에 포함시켜 신고하고 다른 공제 대상이 되는 액수만(비과세 대상인 인건비 등) 공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publication 102(간행물 102호) *미국 연방 정부로의 판매(Sales to the U.S. Government)*을 참조하십시오. 또는 전화 800-400-7115로 문의하십시오.

**타주 혹은 외국과의 상거래**

캘리포니아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상품을 타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캘리포니아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공제가 해당되는지 알아보려면 납세 신고서에 동봉하는 설명서 내용을 참조하거나 법규 제1620호, 타주 및 외국과의 상거래*(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및 publication 101(간행물 101호), *캘리포니아 밖으로 배달된 판매(Sales Delivered Outside California)*를 요청하십시오.

**판매세 상환**

납세 신고서 첫째줄(Line 1) 총매상고에 포함한 판매세액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판매세를 총매상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과세 대상 판매에서 발생한 대손 손실(貸損 損失)**

이미 총매상고에 포함시켜 신고를 했으나 수금이 불가능하게 된 외상 매출금은, 대손(회수 불능 매출금)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손의 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 당한 구매자의 수표로서 매출금 회수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것; 혹은
- 수금이 불가능한 신용 거래 계좌

이 같은 대손은 반드시 소득세 신고시에 결손으로 처리되어져야 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또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현금으로 소득세 상환을 신고하는 경우, 회계 기준 관례에 따라 결손으로 처리되야 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대손 공제는 회계상의 결손 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 대금을 받게 되면 대금을 받은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납세 신고서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 재판매한 과세 대상 물품의 구입 비용**

그러나 대손 손실로 공제할 수 없는 요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금하지 못한 시설비와 보험료는 판매세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미수금은 대손 손실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손 손실의 공제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법규 제 1642호, *대손(Bad Debts)*에 관한 법규집을 주문하거나 또는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 보도록 하십시오.

사용을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판매세 혹은 사용세를 지불하고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 재판매할 경우에는, 납세 신고서를 제출할 때 통상적으로 구매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법규 제 1701호, *세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상품의 재판매(Tax-Paid Purchases Resold)*에 관한 법규집을 주문하십시오.

**반품된 상품**

총매상고의 일부로서 이미 판매를 신고한 경우, 반품된 상품의 판매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상품을 반납하면 고객으로부터 징수했던 판매세를 포함한 판매액 전액을(현금 혹은 크레딧) 환불해 주어야 하며, 환불의 조건으로 더 비싼 상품을 구입하도록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법규 제 1655호, *반품, 불량품, 그리고 대체(Returns, Defects, and Replacements)*에 관한 법규집을 주문하십시오.

반품된 상품에 대한 공제는 판매세를 가산하기 전의 상품 가격에 한정됩니다. 예를 들면, 반품된 상품 가격 $15에 판매세를 가산하여 팔았을 경우, $15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찰 할인 판매**

현찰로 구입할 경우 또는 10일이나 30일 등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불할 경우 할인해주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소에서 제공하는 할인은 납세 신고를 할 때 공제가 허용될 수도 있기도 하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할인된* 가격(정상 가격에서 할인한)으로 판매한 매출액을 총매상고의 일부로 신고할 경우, 이미 할인해준 만큼의 액수를 제하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제할 것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정상* 가격(할인하기 전의 가격)기준으로 매출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판매액보다 더 많은 매출액을 신고한 것이므로 할인해준 만큼의 액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세 신고를 한 다음에 현찰 구입 할인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적정 세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합당한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해준 만큼의 액수를 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에 연락하여 현찰 구입 할인 신고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전화 번호는 800-400-7115입니다.

현찰 할인 판매를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건 간에, 판매세는 물품의 실제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물품 수리에 소요된 인건비에 대한 할인 같은 것은 인건비 자체가 비과세 대상이므로 할인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현찰 할인 판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법규 제1671호, *할인권 스탬프와 이와 연관된 판촉 기획물(Trading Stamps and Related Promotional Plans)*과 법규 제1700호, *판매세의 상환(Reimbursement for Sales Tax)*에 관한 법규집을 주문하십시오.

**기타 공제 대상**

위에 설명한 공제들은 가장 일반적인 것들입니다. 그밖에도 처방약의 판매와 같이 여러 가지 다른 면세 대상들이 있으므로, 면제와 공제 대상 판매에 관하여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하면, 조세 형평국 안내 센터에 연락해서 publication 61호(간행물 61호),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와 예외(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를 주문하십시오. 간행물 주문 방법은 10장에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다.

# 5. 사업체의 매입, 매도, 또는 폐업

*사업체를 매입, 매도 혹은 폐업을 할 경우에는 언제나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연락해야 합니다. 셀러스 퍼밋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퍼밋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사업체를 매도하거나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계좌를 폐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법인 또는 유한 책임 회사인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이 장에 있는 마지막 질문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조세 형평국에 연락할 필요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귀하가 매입하려는 업체의 미납된 판매세 및 사용세를 엉뚱하게도 귀하가 부담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 완납 증명서를 보내 주도록 조세 형평국에(10장에 수록된 가까운 조세 형평국 사무소로 전화하면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받기 전에 업체를 매입하면 만약 전 소유주에게 미납 세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하여 귀하가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모든 부채를 포함한 업체 매입 가격까지).

귀하의 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받으면, 조세 형평국은 귀하께서 매입하려는 업체가 납부해야 할 미납된 판매세 및 사용세, 이자 혹은 벌금이 있는 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만약 미납된 것이 있으면, 현소유주에게 이를 완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내거나 또는 귀하에게 그의 미납세액을 충당할만한 금액을 매입 가격에서 미리 공제하도록 권고할 것입니다. 미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매입하려는 업체가 여러 곳에 점포를 가지고 있고 귀하가 점포 모두를 매입하는 경우, 납세 완납 증명서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 혹은 하나 이상의 점포(점포를 모두 매입하는 것은 아님)를 매입하는 경우, 점포마다 납세 완납 증명서를 발급 받도록 신청해야 합니다.

에스크로 회사를 통하여 업체를 매입할 경우에는, 에스크로 회사가 귀하를 대신해서 반드시 납세 완납 증명서를 신청하도록 하십시오. 현소유주가 그의 미납 세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에스크로가 종결되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매입자인 귀하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소유주의 미납 세금을 충당키 위하여 매입 자금 중 일부를 따로 보관해 두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납세 완납 증명서를 조세 형평국에서 발급해주지 않으면, 전소유주가 다음 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그의 미납세액을 충당할만한 금액을 매입 가격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 미납 세금을 완납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조세 형평국 발행의 영수증 제시, 혹은
- 미납 세금이 없다는 조세 형평국 발행의 증명서의 제시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한 납세 완납 증명서를 조세 형평국에서 발급받으면 미납된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을 별도로 공제해 놓아야 할 법적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사업체를 매입할 경우 새로운 셀러스 퍼밋이 필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의 정당한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새로운 퍼밋이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셀러스 퍼밋 신청자들이 처음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항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1장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셀러스 퍼밋을 가지고 있고 이 퍼밋으로 매입하려는 업체를 운영할 경우, 해당 지역 조세 형평국 지방 사무소에 문의하십시오.

**폐업 또는 사업체를 매도할 경우, 조세 형평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체를 팔거나 또는 폐쇄할 의향이 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조세 형평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에 필요한 양식과 작성 요령은 publication 74(간행물 74호), *셀러스 퍼밋의 말소 (Closing Out Your Seller's Permit)* 에 있으니 이를 주문 하십시오(주문 방법은 26 페이지 참조).

통보를 받으면, 조세 형평국은 귀하의 계좌를 폐쇄하고 셀러스 퍼밋을 취소할 것입니다. 만일 처음 셀러스 퍼밋을 받을 때 현금 혹은 이자가 가산되는 납세 담보를 조세 형평국에 예치했을 경우, 폐업 혹은 사업체의 매도 신고 당시에 미납된 세금이 없으면 담보액 전액을, 그리고 미납된 세금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사업체의 재고품을 매도할 때 조세 형평국에 신고하지 않으면, 매입자 또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 더 이상 사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도 셀러스 퍼밋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동업 관계를 철회할 경우, 조세 형평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업자를 탈락시키거나 영입할 때는 반드시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적시에 신고하면 동업 관계가 변동된 후에 부과되는 세금, 벌금 및 이자에 대한 동업자들의 개인적인 책임을 한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변동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신문 지상에 그러한 변동 사항을 발표하거나 조세 형평국 외의 기타 주정부 기관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조세 형평국에 대한 신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본인이 사업체를 포기하고 배우자가 단독 소유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조세 형평국에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까?**

만일 셀러스 퍼밋에 귀하의 이름이 배우자의 이름과 함께 등재돼 있을 경우, 사업체의 소유권을 포기하면 이 사실을 서면으로 조세 형평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비록 법정 별거나 이혼 판결문에 사업체를 한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돼 있을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조세 형평국에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 혹은 유한 책임 회사의 미납 세금을 개인적으로도 책임지게 됩니까?**

## 다음의 내용은 회사 법인과 유한 책임 회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회사의 책임자 개인이 회사 법인,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유한 책임 회사 법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이자 및 벌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규 제 1702.5호 *책임자의 납세 의무 (Responsible Person Liability)* 및 1702.6 *영업정지 법인(Suspended Corporations)*을 참조하십시오.

# 6.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의 사용

### 재판매 증명서는 왜 필요합니까?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의 구입에는 판매세 혹은 사용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면세에 필요한 증서가 필요하므로, 상품 구입처에서는 귀하가 구입하는 상품이 재판매용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아래에 설명한대로, 재판매 증명서는 상품 구입시에 작성, 제출돼야 하며, 반드시 아래와 같은 특정한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 재판매 증명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재판매 증명서는 특정한 양식이 없이, 노트, 편지 혹은 메모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아래에 있는 내용이 기재돼야 합니다.

- 구입자의 이름과 주소.
- 구입자의 셀러스 퍼밋 번호(만약 구입자가 퍼밋이 필요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아래 "주"를 참조하십시오).
- 구입하는 상품의 명세.
- 구입하는 상품이 재판매용이라는 진술. 재판매 증명서에는 "*재판매될 것임*"*(will be resold)* 또는 "*재판매용*"*(for resale)*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비과세(nontaxable)* 또는 *면제(exempt)* 또는 이와 유사한 어구의 사용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재판매 증명서 작성 일자.
- 구입자 또는 그의 대리인의 서명.

조세 형평국은 재판매 증명서 양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에서 *일반 재판매 증명서(General Resale Certificate)* (BOE-230 양식)를 다운로드하거나 안내 센터 팩스 전송 시스템(24 페이지 참조)을 통해 사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규 제1668호, *재판매용 판매(Sales for Resale)*의 재판매 증명서 견본은 19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는 여러 사무용품점이나 문구점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혀있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 셀러스 퍼밋이 필요없는 사업체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물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거나,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판매하는 업체). 만약 셀러스 퍼밋이 필요없는 업자이지만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셀러스 퍼밋이 필요없는 업자이며, 무슨 이유로 없어도 되는지를 재판매 증명서에 기재하도록 해야 합니다.

### 구매자로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는 저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물품을 구입할 때 구입한 물품을 재판매할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구입하는 물품 중 일부는 재판매용이고 나머지는 세금이 적용되는(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품목일 경우에는, 재판매용으로 구입하는 물품이 무엇인지 구입처에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합니다.

구입하는 물품을 재판매할 것인지 또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판매세 혹은 사용세를 일단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나중에 어떤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에는, 납세 신고할 때, 세금을 내고 구입한 상품의 재판매로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한 구입처에서 서너 번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재판매 증명서를 하나만 제출하고 그로 하여금 서류철에 보관해 두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구매 주문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판매 증명서의 구입 물품 기재란에 "*구매 주문서를 볼 것*"*(See purchase order)*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구입처에서 구입할 경우, 어느 품목이 재판매용인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매용("for resale") 이라고 구매 주문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주문서에 재판매용이라고 표시돼 있지 않은 물품들은 사적 용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받는 판매업자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판매 업자의 책임은 구매자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자의 사업 내용상 통상적으로 재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구매자가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구입한다면, 일단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재판매 증명서에 업종을 주유소라고 기재한 구매자가 주유소에서 통상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소파나 유사한 품목을 구입하면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면 이를 거부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재판매용임을 계속 주장하면, 그가 구입하는 특정한 상품이 그의 사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재판매 하는 상품이란 것을 명시한 재판매 증명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그가 그러한 요구에 응하기를 꺼려하면, 과세 대상 판매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일 구매자가 재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특정한 물품을 구입한다는 것을 알거나 혹은 그렇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으면, 재판매 증명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매 증명서를 받는 시점(時點)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재판매 증명서를 받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전,
- 통상적인 요금 청구 및 지불 주기 내, 또는
- 구매자에게 상품을 배달하기 전에 어느 때라도.

재판매용으로 면세 판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하므로 구매자로부터 받은 재판매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쎌러스 퍼밋 번호가 유효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른 판매 업자로부터 재판매용 상품 구입에 필요한 재판매 증명서를 받은 경우, 무료 전화를 이용하거나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해당 쎌러스 퍼밋 번호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26 페이지에 있는 “쎌러스 퍼밋 번호의 확인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 재판매 증명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 처벌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귀하가 (또는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재판매할 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물품 구입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책임 및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했어야 할 납세액의 징수
-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대한 이자 징수

이와 별도로, 쎌러스 퍼밋을 취소당하고 또한 다음과 같은 벌과금을 물게 될 것입니다.

- 개인의 부당 이득이나 탈세의 목적으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매건 당 탈세액의 10%나 $500중 더 많은 액수의 벌금, 또는
- 사기 또는 의도적인 탈세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5%

탈세의 목적으로 재판매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위법 행위의 경우, 매건 당 최하 $1,000에서 최고 $5,000까지의 벌금형 혹은 최고 1년까지 카운티 구치소에 감금되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과 징역형이 병과되는 경범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견본**
**재판매 증명서**
**법규 제1668호 승인 양식**
***(복사본 사용 가능)***

*본 일반 재판매 증명서 (BOE-230 양식)의 사본은 조세 형평국 웹 사이트 및 안내 센터의 팩스-백 서비스를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주 재판매 증명서
## CALIFORNIA RESALE CERTIFICATE

**다음을 증명합니다.(I HEREBY CERTIFY:)**

1. 소지하고 있는 유효 쎌러스 퍼밋 번호:(That I hold valid seller's permit number:)_____

2. 다음과 같은 종류의 개인 동산 판매 사업에 종사합니다.(I am engaged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following type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_____

_____

3. 본 증명서는 하기 5번 항목에 나열된 품목을 거래하는 다음 업체로부터의 구매를 위한 것입니다.(This certificate is for the purchase from

_____
업체명(Vendor's name)

of the item(s) I have listed in paragraph 5 below.)

4. 본인은 5번 항목에 나열된 품목을 재판매 할 것입니다. 이는 사업 운영 중 개인 동산의 형태로 본 재판매 증명서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며 판매용 품목을 보유하는 동안 시연 및 진열이외 다른 목적으로는 품목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된 내용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본 증명서에 따라 구입한 품목을 사용하는 경우 각 품목 구입 가격에 대한 사용세 또는 기타 법 규정에 준거하여 사용세를 부담합니다.(I will resell the item(s) listed in paragraph 5, which I am purchasing under this resale certificate in the form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the regular course of my business operations, and I will do so prior to making any use of the item(s) other than demonstration and display while holding the item(s) for sale in the regular course of my business. I understand that if I use the item(s) purchased under this certificate in any manner other than as just described, I will owe use tax based on each item's purchase price or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5. 재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품목 설명:(Description of property to be purchased for resale:)

_____

_____

_____

6. 다음 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합니다.(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following:)

**주의 사항:** 구매자가 이미 사적 목적으로(재판매 목적의 보관, 시연, 진열은 제외)사용해 버린 품목을 재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구입 시점부터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매 증명서를 제공하여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세금 상당 금액 지불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세입 및 과세 코드 섹션(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094.5에 의거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이익 또는 탈세를 위해 재판매 증명서를 남용하는 자는 구매 물품 당, 부여되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세금의 10 퍼센트 또는 $500의 벌금(어떤 경우 그 이상)을 부과됩니다.(**For Your Information:** A person may be guilty of a misdemeanor under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094.5 if the purchaser knows at the time of purchase that he or she will not resell the purchased item prior to any use (other than retention, demonstration, or display while holding it for resale) and he or she furnishes a resale certificate to avoid payment to the seller of an amount as tax. Additionally, a person misusing a resale certificate for personal gain or to evade the payment of tax is liable, for each purchase, for the tax that would have been due, plus a penalty of 10 percent of the tax or $500, whichever is more.)

_____
구매자명(Name of Purchaser)

_____
구매자 또는 대리인 서명(Signature of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_____
서명인의 성명(Printed Name of Person Signing) 직위(Title)

_____
구매자 주소(Address of Purchaser)

_____
전화번호(Telephone Number) 날짜(Date)

# 7. 기록 보관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용 구매와 판매에 관한 내용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기록을 유지, 보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기록 보관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면, 법규 제1698호,* 기록(Records) *및* publication 116(간행물 116호)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에 관한 책자를 주문하십시오. 또한, 업종별로 그에 맞게 준비된 세금 안내 책자에도 기록 보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아래에 있는 내용은 조세 형평국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부 기관에서는 조세 형평국과는 다른 내용의 기록 보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 장부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세 형평국 직원이 세무 감사를 하게 될 경우, 업체의 회계 장부가 있어야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판매세 및 사용세 납세 신고를 정확히 하였는 지를 확인하는 일
-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일

장부 기록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태만 또는 탈세 의도가 있는 증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어떤 종류의 장부와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까?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정한대로 정확한 액수의 세금을 납부했는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아래와 같은 기록들을 보관해야 합니다

- 통상적인 회계 장부(컴퓨터에 저장된 회계 자료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회계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원 자료(예를 들면, 청구서, 영수증, 송장(送狀), 작업 주문서, 계약서 또는 기타 근거 서류)
- 납세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사용한 모든 명세서나 계산 용지

### 장부에는 무엇을 기록해야 합니까?

회계 장부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 모든 판매 혹은 리즈(임대)의 총매출액–세금 공제라고 생각되는 판매 혹은 리즈의 매출액도 이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 납세 신고서에 기재한 모든 공제 항목
- 재판매, 소비 또는 리즈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의 총구매액

### 회계 장부와 문서의 보존 기간은 몇 년입니까?

보존 기간 만료 이전에 폐기 처분해도 좋다는 조세 형평국의 서면 허가서를 받기 전에는 판매세 및 사용세에 관한 모든 서류는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판매세 및 사용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에 관련된 문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조세 형평국의 세무 감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과세 기간에 해당되는 모든 기록을 감사가 끝날 때까지 또는(– 감사 결과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불 크레임을 할 경우에는 – 이의나 환불 크레임이 해결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 그 동안 받은 재판매 또는 면제 증명서를 보관해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들은 모든 비과세 판매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증명서들을 보관해두지 않았을 경우, 다른 방법으로라도 비과세 대상 판매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해당 비과세 판매에 대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벌금까지 물게 됩니다.

# 8. 법규

이 장에 수록된 규정들은 판매세 및 사용세에 적용되는 것들입니다. 규정 책자의 주문 방법은 2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조세 형평국 규정들은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 및 사용세법 (California Sales and Use Tax Law)의 시행과 해석을 위하여, 또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주기적으로 개정됩니다.*

1500 서문 *(Foreword)*

## 서비스업

1501 서비스업 일반 *(Service Enterprises Generally)*
1501.1 연구 개발 계약 *(Research and Development Contracts)*
1502 컴퓨터, 프로그램, 자료 처리 *(Computers, Programs, and Data Processing)*
1502.1 워드 프로세싱 *(Word Processing)*
1503 병원, 환자 수용 시설 및 요양소 *(Hospitals, Institutions and Homes for the Care of Persons)*
1504 선전용 주소록과 서비스 *(Mailing Lists and Services)*
1505 장의사 *(Morticians)*
1506 기타 서비스업 *(Miscellaneous Service Enterprises)*

## 청부업자 및 하청업자

1521 건축업자 *(Construction Contractors)*
1521.4 조립식 주택 *(Factory-Built Housing)*

## 제조업자, 제작업자, 가공업자

1524 제품 제조업자 *(Manufacturers of Personal Property)*
1525 제조업에 사용되는 물품 *(Property Used in Manufacturing)*
1525.1 제조업에 사용되는 보조품 *(Manufacturing Aids)*
1525.2 제조 장비 *(Manufacturing Equipment)*
1525.3 제조 장비-유형 물품의 리즈 *(Manufacturing Equipment-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1525.5 제조 부산물 및 합작물 *(Manufacturing By-Products and Joint-Products)*
1526 고객이 제공한 재료를 사용한 물품의 제조, 제작 및 가공-일반 규정 *(Producing, Fabricating and Processing Property Furnished by Consumers-General Rules)*
1527 녹음 *(Sound Recording)*
1528 사진사, 복사, 인화업자 및 X선 검사실 *(Photographers, Photocopiers, Photo Finishers and X-Ray Laboratories)*
1529 영화 *(Motion Pictures)*
1530 주물 공장 *(Foundries)*
1531 모피 가공 및 염색 업자 *(Fur Dressers and Dyers)*
1532 텔레프로덕션 또는 기타 포스트프로덕션 서비스 장치 *(Teleproduction or Other Postproduction Service Equipment)*

## 인쇄 예술 및 연관 사업

1540 광고 대행사, 상업 예술가 및 디자이너 *(Advertising Agencies, Commercial Artists and Designers)*
1541 인쇄 및 관련 예술 *(Printing and Related Arts)*
1541.5 판매 광고 인쇄물 *(Printed Sales Messages)*
1543 출판업자 *(Publishers)*

## 시설, 수리 및 재생업자

1546 일반적인 시설, 수리 및 수선 *(Installing, Repairing, Reconditioning in General)*
1548 타이어 재생 *(Retreading and Recapping Tires)*
1549 모피 수선, 개조 및 개형업자 *(Fur Repairers, Alterers and Remodelers)*
1550 의자류 수선업자 *(Reupholsterers)*
1551 페인트 칠을 다시 하고 표면을 재생하는 일 *(Repainting and Refinishing)*
1553 기타 수리업 *(Miscellaneous Repair Operations)*

## 특정 소매업종

1565 경매 업자 *(Auctioneers)*
1566 자동차 판매상 및 판매원 *(Automobile Dealers and Salesmen)*
1567 은행 및 보험회사 *(Banks and Insurance Companies)*
1568 맥주, 포도주 및 주류 판매상 *(Beer, Wine and Liquor Dealers)*
1569 판매용 물품의 수탁자 및 담보권자 *(Consignees and Lienor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for Sale)*
1570 자선 단체 *(Charitable Organizations)*
1571 원예업 *(Florists)*
1572 장례물품 판매업자 *(Memorial Dealers)*
1573 법원 명령에 의한 경매, 차압 및 회수 *(Court-Ordered Sales, Foreclosures and Repossessions)*
1574 자판기 영업자 *(Vending Machine Operators)*
1583 모듈식 시스템 가구 *(Modular Systems Furniture)*

## 특수한 종류의 물품과 면제 일반적인 것

1584 회비 *(Membership Fees)*
1585 휴대용 전화, 페이저 및 기타 무선 통신기기 *(Cellular Telephones, Pagers, and Other Wireless Telecommunication Devices)*
1586 공공 전시용 예술품 및 박물관 소장품 *(Works of Art and Museum Pieces for Public Display)*
1587 동물, 사료, 의약품 *(Animal Life, Feed, Drugs and Medicines)*
1588 종자, 묘목 및 비료 *(Seeds, Plants and Fertilizer)*
1589 용기 및 라벨 *(Containers and Labels)*
1590 신문 및 정기 간행물 *(Newspapers and Periodicals)*
1591 약품 및 의료장비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
1591.1 특수 의료 장비, 기구 및 관련 물품 *(Specific Medical Devices, Appliances, and Related Supplies)*
1591.2 휠체어, 목발, 지팡이, 보행기 *(Wheelchairs, Crutches, Canes, and Walkers)*
1591.3 장애인 전용차량 *(Vehicles for Physically Handicapped Persons)*
1591.4 의학 산소 공급 시스템 *(Medical Oxygen Delivery Systems)*
1592 안경 및 기타 안과용 재료 *(Eyeglasses and Other Ophthalmic Materials)*
1593 항공기 및 항공기기 *(Aircraft and Aircraft Parts)*
1594 선박 *(Watercraft)*
1595 비정기적인 판매-사업체의 매도-매도 구조 조정 *(Occasional Sales-Sale of a Business-Business Reorganization)*
1596 건물 및 고정 부착물 *(Buildings and Other Property Affixed to Realty)*
1597 특정 비영리 단체가 양도하거나 매각하는 재산 *(Property Transferred or Sold by Certain Nonprofit Organizations)*

1598 차량 및 항공기 연료 *(Motor Vehicle and Aircraft Fuels)*
1599 동전 및 금괴 *(Coins and Bullion)*

### 식품 및 식사

1602 식품 *(Food Products)*
1602.5 식료 잡화상들의 신고 방법 *(Reporting Methods for Grocers)*
1603 과세 대상이 되는 식품의 판매 *(Taxable Sales of Food Products)*

### 차량, 선박 및 항공기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

1610 차량, 선박 및 항공기 *(Vehicles, Vessels, and Aircraft)*
1610.2 이동 주택 및 상업용 버스 *(Mobilehomes and Commercial Coaches)*

### 연방 정부와 관련된 문제들

1614 연방 정부 및 정부 대행 기관에 대한 판매 *(Sales to the United States and Its Instrumentalities)*
1616 연방 관할 지역 *(Federal Areas)*
1617 연방 세금 *(Federal Taxes)*
1618 연방 정부와의 납품 계약 *(United States Government Supply Contracts)*
1619 미국 주재 외국 영사 *(Foreign Consuls)*

### 타주 및 외국과의 통상 거래

1620 타주 및 외국과의 통상 *(Interstate and Foreign Commerce)*
1620.2 철도, 기선, 항공기 등에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료수 *(Beverages Sold or Served by Carriers)*
1621 여객 운송업자에 대한 판매 *(Sales to Common Carriers)*

### 화물 운송과 관계되는 문제

1628 운송비 *(Transportation Charges)*
1629 운송 도중 파손된 화물 *(Goods Damaged in Transit)*
1630 포장업자, 하역업자, 운송업자 *(Packers, Loaders, and Shippers)*
1632 배달할 때 대금 징수하는 수수료 *(C.O.D. Fees)*

### 신용 거래

1641 신용 거래와 매품의 회수 *(Credit Sales and Repossessions)*
1642 대손-악성 부채 *(Bad Debts)*
1643 데빗 카드 요금 *(Debit Card Charges)*

### 교환, 반품, 불량품

1654 물물교환, 교환, "트레이드-인" 및 외환 거래 *(Barter, Exchange,"Trade-ins"and Foreign Currency Transactions)*
1655 반품, 불량품 및 대체 *(Returns, Defects and Replacements)*

### 물품의 리즈

1660 물품의 리즈-일반 *(Leases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In General)*
1661 운송 장비의 리즈 *(Leases of Mobile Transportation Equipment)*

### 재판매 증명서; 시범, 사은품 및 판촉

1667 면제 증명서 *(Exemption Certificates)*
1668 재판매용 판매 *(Sales for Resale)*
1669 재판매용 상품의 시범, 전시 및 사용-일반 *(Demonstration, Display and Use of Property Held for Resale-General)*
1669.5 재판매용 상품의 시범, 전시 및 사용-차량 *(Demonstration, Display and Use of Property Held for Resale-Vehicles)*
1670 사은품, 마케팅 보조물, 프리미엄 및 상금 *(Gifts, Marketing Aids, Premiums and Prizes)*
1671 경품권 및 관련 판촉 플랜 *(Trading Stamps and Related Promotional Plans)*

### 사용세의 납부와 징수

1684 소매상에 의한 사용세의 징수 *(Collection of Use Tax by Retailers)*
1685 구매자에 의한 사용세의 납부 *(Payment of Tax by Purchasers)*
1686 소매상에게 납부한 세금 영수증 *(Receipts for Tax Paid to Retailers)*
1687 신고서에 관한 사항 *(Information Returns)*

### 행정에 관한 기타 사항

1698 기록 *(Records)*
1699 퍼밋 *(Permits)*
1699.5 직납 퍼밋-直納許可 *(Direct Payment Permits)*
1700 판매세의 상환 *(Reimbursement for Sales Tax)*
1701 "판매세를 납부한 상품의 재판매" *("Tax-Paid Purchases Resold")*
1702 사업체 인수자의 책임 *(Successors' Liability)*
1702.5 소관 업무 책임자의 책임 부담 *(Responsible Person Liability)*
1702.6 영업정지 법인 *(Suspended Corporations)*
1703 이자 및 과료 *(Interest and Penalties)*
1704 소수점 이하 반올림-신고서 및 기타 문서에 계산할 때 *(Whole Dollar Reporting-Computations on Returns or Other Documents)*
1705 책임 부담의 해제 *(Relief from Liability)*
1705.1 책임이 면제된 배우자의 부담 해제 *(Innocent Spouse Relief from Liability)*

### 브래들리-번즈 방식의 균일 지방 판매세와 사용세

1802 브래들리-번즈 방식의 균일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 *(Place of Sale for Purposes of Bradley-Burns Uniform Local Sales and Use Taxes)*
1803 세금 적용 *(Application of Tax)*
1805 일반 여객기 *(Aircraft Common Carriers)*
1806 건축업자 *(Construction Contractors)*

### 거래-판매-판매세 및 사용세

1821 서문 *(Foreword)*
1822 거래-판매-판매세 및 사용세 부과 목적상 적용되는 매매 거래 지역 *(Place of Sale for Purposes of Transactions [Sales] and Use Taxes)*
1823 판매세 및 사용세의 적용 *(Application of Transactions [Sales] Tax and Use Tax)*
1823.5 특정한 차량, 항공기 및 미등록 선박의 인도(引渡) 장소, 지역 *(Place of Delivery of Certain Vehicles, Aircraft, and Undocumented Vessels)*
1825 일반 여객기 및 수상 선박 *(Aircraft Common Carriers)*
1826 건축업자 *(Construction Contractors)*
1827 소매상에 의한 사용세의 징수 *(Collection of Use Tax by Retailers)*

# 9. 간행물

### 간행물 사본을 얻는 방법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4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세금 정보

**정보가 급히 필요하십니까?**

세금 정보(Tax Facts)를 찾아보십시오. 각 낱장 간행물마다 관련 항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 운송 및 배달료 *(Shipping and Delivery Charges)**
101 타주로 배달하는 상품의 판매 *(Sales Delivered Outside California)**
102 미연방정부에 대한 판매 *(Sales to the U.S. Government)**
103 재판매용 판매 *(Sales for Resale)**
104 다른 국가의 거주민에 대한 판매 *(Sales to Residents of Other Countries)**
105 특별 조세구역 세금 및 배달 판매 *(District Taxes and Delivered Sales)**
106 선물용 포장 수수료 *(Gift Wrapping Charges)*
107 캘리포니아 주 셀러즈 퍼밋이 필요합니까? *(Do You Need a California Seller's Permit?)**
108 인건비는 언제 과세 대상이 됩니까? *(When Is Labor Taxable?)**
109 인터넷 판매는 과세 대상입니까? *(Are Your Internet Sales Taxable?)**
110 캘리포니아 사용세 기본사항 *(California Use Tax Basics)**
111 물물 교환, 벼룩 시장 및 특별 행사의 운영자 *(Operators of Swap Meets, Flea Markets & Special Events)**
112 타주 업체로부터 구입 *(Purchases from Out-of-State Vendors)**
113 쿠폰 및 판매세 *(Coupons and Sales Tax)**
114 위탁 상품 판매 *(Consignment Sales)*
115 팁에 대한 판매세 적용 *(Applying Sales Tax to Tips)**
116 판매세 및 사용세 기록 *(Sales and Use Tax Records)*

* 스페인어로도 제공

## 판매 및 사용세 간행물

**1부에 한해서 수수료 없음**

***주—간행물 번역판:***

번역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가 하나 이상 제목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C–중국어 S–스페인어
K–한국어 V–베트남어

### 총론

1 판매세 및 사용세법 *(Sales and Use Tax Law)*
2 균일적인 지방 판매세 및 사용세법과 상거래 및 사용세법 *(Uniform Local Sales & Use Tax Law and Transactions & Use Tax Law)*
17 이의 신청 절차 *(Appeals Procedures)*
21 조세 형평국 – 개요 *(State Board of Equalization–[agency overview])*
42 재판매 증명서에 관한 요령 *(Resale Certificate Tips) (S)*
51 조세 형평국 취급 업무 안내서 *(Guide to Board of Equalization Services) (C, K, S, V)*
54 세금 징수 절차 *(Tax Collection Procedures)*
56 타협 제의 *(Offers in Compromise)*
58–A 기록을 검사하고 정정하는 방법 *(How to Inspect and Correct Your Records)*
61 판매세 및 사용세: 면제와 제외 *(Sales and Use Taxes: Exemptions and Exclusions)*
70 캘리포니아 주 납세자 권리 장전 *(The California Taxpayers'Bill of Rights) (C, K, S, V)*
71 캘리포니아 시 및 카운티의 판매세 및 사용세 세율 *(California City and County Sales and Use Tax Rates)*
73 캘리포니아 셀러스 퍼밋 *(Your California Seller's Permit) (C, K, S, V)*
74 셀러스 퍼밋 계좌 폐쇄 정리 *(Closing Out Your Seller's Permit) (S)*
75 이자 및 벌금의 납부 *(Interest and Penalty Payments)*
76 세무 감사 *(Audits) (K, S)*
77 타주 셀러 : 캘리포니아에 등록해야 합니까? *(Out-of-State Sellers : Do You Need to Register in California?)*
79 등록 필 선박과 캘리포니아 세금 *(Documented Vessels and California Tax)*
79–A 항공기와 캘리포니아 세금 *(Aircraft and California Tax)*
80 전자 자금 이체 방식 프로그램: 정보 안내서 *(Electronic Funds Transfer Program: Information Guide)*
81 사업 및 개인 소득세에 관한 이의 신청 *(Franchise and Personal Income Tax Appeals)*
82 연료 판매시 선납한 판매세 *(Prepaid Sales Tax on Sales of Fuel)*

### 유료 간행물 800-400-7115로 전화하십시오.

- 영업세법 안내서 *(Business Taxes Law Guide)*
- 영업세 세금 감사 지침 안내서 *(Business Taxes Audit Manual)*
- 법규 준수를 위한 방침 및 절차에 관한 지침서 *(Compliance Policy and Procedures Manual)*

### 업종별 세금 안내 소책자 *(다음 업종에 대한 세금 안내)*

9 건설 및 건축 청부업자 *(Construction and Building Contractors)*
12 캘리포니아 사용 연료세 – 연료 판매상과 소비자를 위한 안내 *(California Use Fuel Tax: A Guide for Vendors and Users) (S)*
18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s)*
22 요식업 및 음료업 *(Dining and Beverage Industry) (K,S)*
24 리커 스토어 *(Liquor Stores) (S)*
25 자동차 정비소 및 주유소 *(Auto Repair Garages and Service Stations) (S)*
27 약방 겸 잡화점 *(Drug Stores)*
31 식품점 *(Grocery Stores) (C, K, S, V)*
32 멕시코 구매자에 대한 판매 *(Sales to Purchasers from Mexico) (S)*
34 자동차 딜러 *(Motor Vehicle Dealers)*
35 실내 장식 디자이너와 장식가 *(Interior Designers and Decorators)*
36 수의사 *(Veterinarians)*
37 그래픽 도안업 *(Graphic Arts Industry)*
38 광고 회사 *(Advertising Agencies)*
40 선박업계 *(Watercraft Industry)*
44 특별 조세구역 세금 *(District Taxes)*
45 병원 *(Hospitals)*
46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물품 임대 *(Leasing of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 California)*
47 이동 주택 – 모빌 홈 – 및 조립식 주택 *(Mobilehomes and Factory-Built Housing)*
62 자물쇠 제조공 *(Locksmiths)*
64 보석상점 *(Jewelry Stores)*
66 사료 및 농기구 소매상 *(Retail Feed and Farm Supply Stores)*
68 사진 촬영, 인화 및 현상소 *(Photographers, Photo Finishers and Film Processing Laboratories)*

### 납세 신고 일정, 회보, 연중 행사표 및 보고서

- 세금 정보 회보–3개월마다 *(Tax Information Bulletin) (quarterly)*
- 세금 정보 회보 *(Tax Information Bulletin Index)* (간행물 25호)
- 캘리포니아 주 판매세 및 이용세 상환 스케줄 – 세율을 명시할 것 *(State of California Sales Tax Reimbursement Schedules)*
- 조세 형평국 위원회 연중 회의 일정표 *(Annual Calendar of Board Meetings)*
- 캘리포니아 주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판매 *(Taxable Sales in California)*
-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
- 조세 형평국 청문회 절차 – 규정 *(Hearing Procedures of the State Board of Equalization) (regulations)*

# 10. 도움이 필요할 경우

## 정보 안내 센터

**800-400-7115**

**TDD(전화):**
**800-735-2929**

**TDD(자동응답):**
**800-735-2922**

**일반적인 세금 질문**

업무 시간에는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국경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월요일 –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러분의 질문과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또는 시간에 관계없이 조세 형평국 자동 안내 전화를 이용하십시오.(예를 들어, 간행물 요청 메시지를 남기거나, 음성 메시지를 듣거나 또는 하단에 설명된 자동 팩스-백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양식이나 통지서의 팩스 카피의 주문**

조세 형평국의 팩스-백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800-400-7115로 전화하여 팩스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2개국어 서비스 요청**

조세 형평국에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2개국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탈세 혐의의 신고**

업무 시간 중에 888-334-3300로 전화하여 조세 형평국 직원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 셀러스 퍼밋 번호의 확인 방법

만약 다른 소매업자가 재판매용 상품을 구입하면서 재판매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그의 셀러스 퍼밋 번호를 확인하려면 조세 형평국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 888-225-5263로 전화하거나 www.boe.ca.gov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 7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의 셀러스 퍼밋 번호, 업소명, 업주 성명, 그리고 업소 주소를 알고 있어야 조세 형평국의 정보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좌에 관한 질문

귀하의 계좌에 대한 특정 질문(예를 들어, 세무 감사, 납세, 혹은 고지서 등)이 있으면, 귀하의 계좌를 보관하고 있는 조세 형평국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납세 신고서에 해당 조세 형평국 지방 사무소와 전화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 지방 사무소 전화 번호는 27 페이지에 있습니다.

## 간행물 및 규정집

간행물과 규정집을 원하시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800-400-7115로 전화하십시오.** 업무 시간 중에 전화하면 담당 직원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할 경우, 본인이 원하는 간행물, 양식, 혹은 법규집을 알고 있으면, 메시지를 녹음해 두십시오. 또한 위에 설명한대로 특정한 문서들은 자동 팩스 응답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 형평국 지방 사무소로 연락하십시오.** 27 페이지를 보면 지방 사무소 전화 번호가 있습니다. 간행물을 구하러 직접 방문할 계획이면, 원하는 간행물이 있는지 미리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조세 형평국 인터넷 사이트 www.boe.ca.gov를 방문하십시오.** 특정 간행물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이나 팩스로 보낼 주문서도 인터넷에서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 세금 정보 회보

조세 형평국에 등록된 판매업자들은 3개월마다 발간되는 *세금 정보 회보(Tax Information Bulletin)*를 받게 되는데, 이 회보에는 특정한 종류의 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기사, 신간 또는 수정판 간행물에 관한 소식, 그리고 판매업자들에게 관심사가 되는 여러 가지 기사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회보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서 용지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우송됩니다. 1년에 한 번씩 납세 신고를 하는 업자인 경우, 이 회보를 받기를 원하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소로 편지를 보내 우편물 수신자 목록 15번(Mailing List #15)에 포함시켜 주도록 요청하십시오: Attn: Addressing Systems; Mail Services Unit, MIC:12;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12.

## 세금에 관한 조언서

세금에 관한 조언은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금이 문제가 될 경우, 귀하가 조세 형평국의 서면 조언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인정되면 그에 대한 세금, 벌금, 혹은 이자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선 과세 여부에 대한 조언을 해주도록 서면으로 요청하고, 해당 납세자의 신원을 밝히고, 거래에 관한 모든 사실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조언서 요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State Board of Equalization; Public Information and Administration Section, MIC:44;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44

## 세금 강좌반

조세 형평국의 일부 지방 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판매세 및 사용세 신고 방법에 관한 기본 강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조세 형평국 사무소에 연락하여 언제 신규 사업자들을 위한 강좌가 열리는지 미리 알아보십시오.

## 인터넷 이용- www.boe.ca.gov

조세 형평국의 웹 사이트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간행물 다운로드, 정보 요청을 위한 전자우편 발송, 사용할 세금의 세율, 조세 형평국 위원 및 공청회 정보 및 셀러스 퍼밋 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권리 옹호위원 사무소

만약 조세 형평국과의 이견(異見)을 해결할 수 없거나 또는 판매세 및 사용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납세자 권리 옹호위원회로 연락하여 도움을 청하십시오. 무료 전화 번호 888-324-2798이며, 팩스 번호는 916-323-3319입니다.

만약 직접 편지하려면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Taxpayers' Rights Advocate, MIC:70; State Board of Equalization; 450 N Street; P.O. Box 942879; Sacramento, CA 94279-0070

## 지방 사무소

| 도시명 | 지역 코드 | 전화 번호 |
|---|---|---|
| Bakersfield | 661 | 395-2880 |
| Culver City | 310 | 342-1000 |
| El Centro | 760 | 352-3431 |
| Eureka | 707 | 445-6500 |
| Fresno | 559 | 248-4219 |
| Kearny Mesa | 858 | 636-3191 |
| Laguna Hills | 949 | 461-5711 |
| Norwalk | 562 | 466-1694 |
| Oakland | 510 | 622-4100 |
| Rancho Mirage | 760 | 346-8096 |
| Redding | 530 | 224-4729 |
| Riverside | 909 | 680-6400 |
| Sacramento | 916 | 227-6700 |
| Salinas | 831 | 443-3003 |
| San Diego | 619 | 525-4526 |

| 도시명 | 지역 코드 | 전화 번호 |
|---|---|---|
| San Francisco | 415 | 356-6600 |
| San Jose | 408 | 277-1231 |
| San Marcos | 760 | 510-5850 |
| Santa Ana | 714 | 558-4059 |
| Santa Rosa | 707 | 576-2100 |
| Stockton | 209 | 948-7720 |
| Suisun City | 707 | 428-2041 |
| Torrance | 310 | 516-4300 |
| Van Nuys | 818 | 904-2300 |
| Ventura | 805 | 677-2700 |
| West Covina | 626 | 480-7200 |

### 타주의 계좌 관리를 위한 사무소

| | | |
|---|---|---|
| Chicago, IL | 312 | 201-5300 |
| Houston, TX | 281 | 531-3450 |
| New York, NY | 212 | 697-4680 |
| Sacramento, CA | 916 | 227-6600 |

## 다른 세금 프로그램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까?

조세 형평국에서는 판매세 및 이용세 외에 서너 개의 다른 세금과 수수료를 관리합니다. 조세 형평국에서 관리하는 다른 종류의 세금 프로그램과 누가 일반적으로 이에 해당되는가를 아래에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거나 어느 특정한 세금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를 원하면, 해당 부서로 연락하십시오. 조세 형평국에서 관리하는 모든 세금과 수수료 프로그램의 목록을 원하면, publication 51(간행물 51호), *조세 형평국 취급 업무 안내서(Guide to Board of Equalization Services)*를 주문하십시오.

## 소비세과 800-400-7115

**주세(酒稅)**

도매상, 양조업자, 그리고 주류 수입상

**궐련 및 담배 제품세**

시가(여송연), 씹는 담배, 파이프 담배 및 코담배와 같은 궐련 및 담배 제품 도매상 및 공급업자

**켈리포니아 타이어 수수료**

새 타이어 소매업자

## 연료세과 800-400-7115

**디젤 연료세**

디젤 연료 공급업자

**타주의 사용자세 (IFTA)**

타주에서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 운전자

**차량 연료 면허세**

가솔린 공급업자

**지하 저장 탱크 유지 수수료**

주유소 소우주를 포함한 석유 제품 지하 저장 탱크 소유주

**사용 연료세**

가솔린이나 디젤유가 아닌 LPG, LNG, CNG, 특정한 알코올 또는 알코올 배합 연료, 에탄올 및 메탄올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주와 운전자; 사용 연료 판매상

## 환경보호 수수료 징수과 800-400-7115

**특정 행위 및 다단계 퍼밋 수수료**

위험 폐기물 퍼밋, 특례 혹은 폐기물 분류 등의 허가를 위하여 독성 물질 관리국에 신청하도록 규정된 사업체

**바닥짐 물 수수료**

독점 경제 구역(Exclusive Economic Zone) 외의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들어 오는 바닥짐 물을 선적한 선박

**환경보호 수수료**

다음과 같은 표준 산업 분류 코드: 즉 88, 일반 가정; 그리고 8361, 주거식 요양 시설을 제외한,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업을 하는 법인

**폐기물 시설 수수료**

타업체에서 수거한 위험 유독 산업 폐기물을 저장, 화학적 처리 또는 처치하는 시설의 운영자

**폐기물 발생자 수수료**

사업장 1개소에서 연 5톤 이상의 유독 산업 폐기물을 방출하는 사업체

**작업장에서의 납중독 예방 수수료**

납중독 가능성이 있는 업종의 사업체에서 1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California State Board of Equalization**
**450 N Street • Sacramento, California**
**(우편물 주소: P.O. Box 942879 • Sacramento, CA 94279-0001)**